

目 次

1. 1997년도군정계획 ————— 36
2.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범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 74

1997年度

郡政計劃

平昌郡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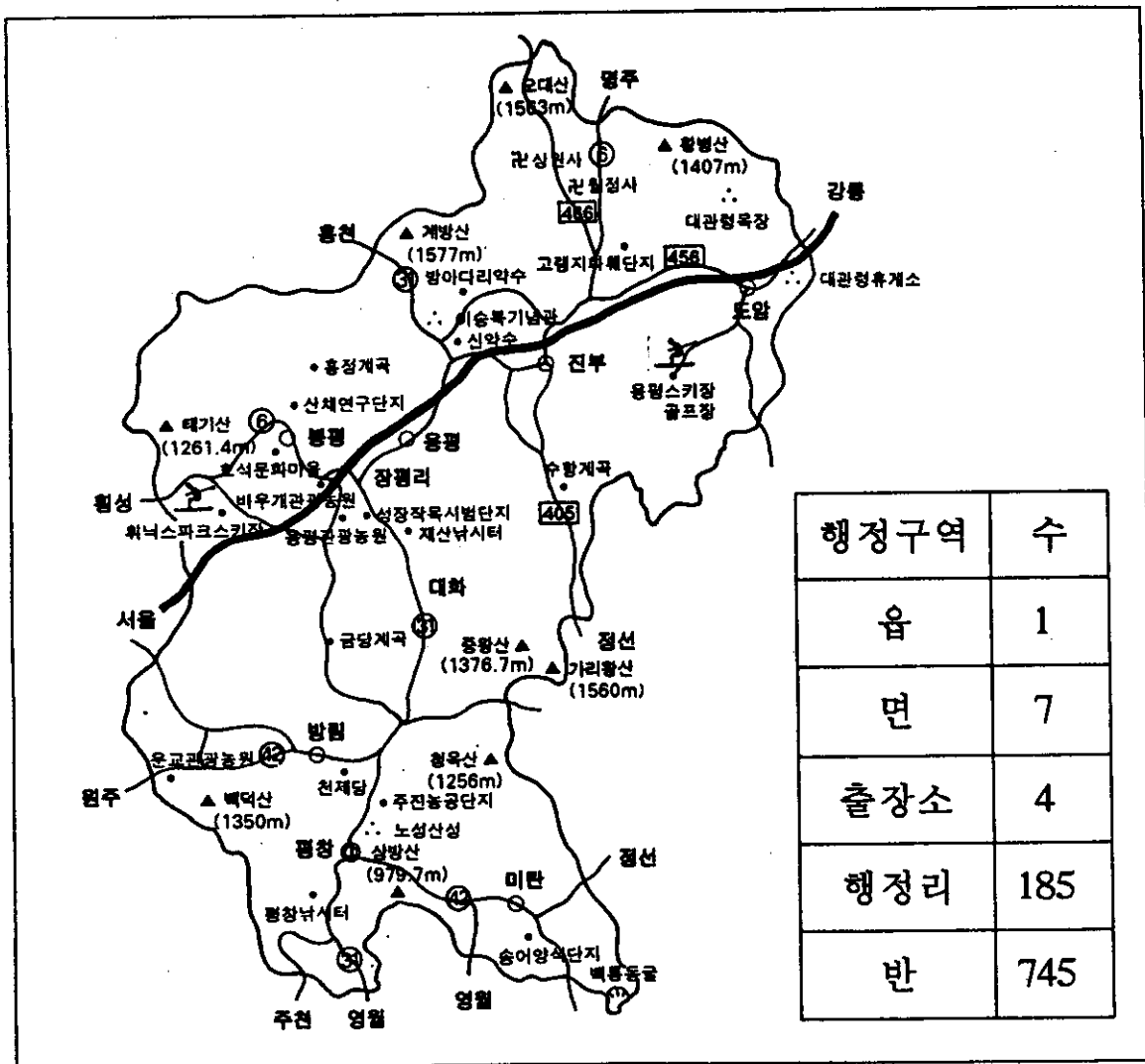
一 般 現 況

地 域 特 性 及 課 題

'96郡政의 成果와 敎訓

'97 郡政方向과 力點施策

一 般 現 況



— 江原道 南部 內陸 位置 —

- 面 積 : 1,463km² (農地 147, 山林 1,234, 其他 82)
- 世 帶 數 : 15,287世帶 (農家 5,879, 非農家 9,408)
- 人 口 : 49,289名 (男 25,034, 女 24,255)
- 公 務 員 數 : 628名

財 政 規 模

(總 : 94,114 百萬元)

- 一般會計 ————— 86,509 百萬元 (92%)
- 特別會計 ————— 7,605 百萬元 (8%)

□ 一般會計

○ 歲 入

- 自 來 水 費 收 入 : 20,607 百萬元 (24%)
- 稅 收 收 入 : 65,902 百萬元 (76%)

○ 歲 出

- 人 員 費 用 : 12,844 百萬元 (15%)
- 經 營 費 用 : 17,506 百萬元 (20%)
- 投 資 費 用 : 55,010 百萬元 (64%)
- 預 備 費 用 · 其 他 : 1,149 百萬元 (1%)

※ 1人當 : 담세액 418 千원, 투자액 1,116 千원

□ 特別會計 (7 種)

上 水 道	住 宅 事 業	醫 療 保 護 基 金	住 民 所 得 支 援 及 生 活 安 定 基 金	農 工 地 區 造 成 及 管 理 事 業	發 電 所 周 邊 地 域 支 援 事 業	駐 車 場 設 置 及 管 理
5,838	647	820	173	55	40	32

地域特性과課題

□ 廣闊한 山林으로 山地開發의 無限 發展性 潛在

⇒ 산지자원의 소득화(육림, 관광, 휴양)

□ 天惠의 觀光資源으로 高原觀光 休養地 浮刻

⇒ 자연과 조화된 관광자원 지속개발

□ 긴 겨울 많은 눈을 가진 冬季스포츠의 適地

⇒ 98월드컵 및 99동계아시안게임의 성공적개최

□ 接近路의 다양으로 中部內陸의 열린지역

⇒ 내륙의 거점 도시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 漢江 水系의 最上流 지역으로 淸淨地帶

⇒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자연환경의 청정성 지속유지

'96郡政의 成果와 教訓

'96郡政의 成果와 敎訓

[成果와 보람]

○ 郡民의 和合과 自尊意識 振作

- 지역위기상황에 대한 결연한 대처
 - 무장공비출현시 군민의 높은 안보의식 확인
 -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산물 팔아주기 전군민 동참
- 전국 한우챌피은 대회 우승 : 비육우 부문 1위
- 제14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입상 : 장려상(미탄농악)

○ 農畜産物의 對外 競爭力 確保

- 전국 최초의 대관령 한우고기 품질인증 획득
- 무공해 청정 농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 劃期的인 地域開發 轉機마련

- 동계국제대회 개최지정비계획수립 : 28개사업, 88,578백만원
- 대관령관광 특구지정 : 국내제일의 고원관광 휴양지 부상

[反省과 敎訓]

○ 集團民怨에 對한 效率的 對處未洽

⇒ 행정의 집단민원 중재기능강화

○ 地域利己主義로 因한 懸案事業 推進遲延

⇒ 합리적사고, 공동체의식 함양

'97 郡政方向 斗力點施策

'97 郡 政 方 向

— 天惠資源 우리平昌 함께가꿀 未來의 땅 —

【 郡 政 方 針 】

- 滿 足 한 奉 仕 行 政
- 녀 녀 한 所 得 增 大
- 푸 르 른 地 域 開 發
- 훈 훈 한 福 祉 社 會

【 力 點 施 策 】

1. 成 熟 한 自 治 力 量 培 養
2. 住 民과 함께하는 奉 仕 行 政 具 現
3. 農 業 의 競 爭 能 力 培 養
4. 맑 고 깨끗 한 環 境 保 存
5. 따 뜻 한 保 健 福 祉 向 上
6. 均 衡 的 地 域 開 發 促 進
7. 觀 光 産 業 育 成 과 文 化 體 育 振 興
8. 冬 季 國 際 大 會 完 璧 한 準 備

成熟한 自治力量 培養

1. 自治力量 強化

○ 自治 行政力 定着

- 공무원의 자기 혁신 : 사고전환, 지식함양, 무한경쟁시대 대응
- 공무원사회활동참여 : 사회단체가입, 주민과의 일체감조성
- 지역의 화합 안정 : 지역간 갈등, 집단이기주의 극복
- 의회와의 동반관계구축 : 간담회 정례화, 지역현안 공동대처

○ 自主財源의 持續的 擴充

- 지방세수증대 : 신세원발굴, 탈루세원조사, 체납액 일소
- 기업민자유치 : 지역개발촉진, 지방세원 확충
- 건전재정운영 : 낭비요인제거, 생산부분투자
- 경영소득사업 : 균유립경영합리화, 골재채취사업

○ 競爭力 10%以上 높이기

-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제공 : 각종 규제완화, 신속·공정한 행정
- 불합리한 관행개선 : 회의시간단축, 문서생산감축등
- 효율적 에너지관리 : 난방기구, 전기용품, 각종장비등 적정운용

2. 地方의 世界化 實現

○ 國際競爭力을 위한 力量強化

- 경제 및 의식 교육 : 공무원, 사회단체, 주민
- 공무원 1인1외국어 습득 : 영어, 일어등
- 공무원 해외 연수 실시 : 국제적 안목배양

○ 尖端行政 情報網 構築

- 원격화상회의시스템(군→도) : 행정의 효율성 증진
- 행정, 예산정보시스템 : 행정의 능률성, 정확성 제고

○ 國際水準의 案內施設 擴充

- 홍보물, 안내시설의 외국어 병기 : 안내책자, 안내표지판
- 다중 이용 시설의 국제 수준화 : 터미널, 공중화장실

○ 國際交流 事業 推進

- 대상 국 : 일본, 중국
- 교류 분야 : 자치행정, 관광, 농업실무교류
- 추진 실적
 - 행정 기관 : 평창군 + 중국안달시 (교류의향서 교환)
 - 민간 단체 : 대관령 JC + 대만 북두JC (자매결연 체결)
- 향후 계획 : 교류활성화 및 교류지역 확대 (일본)

3. 地域安定基盤의 構築

○ 地域安定의 責任管理 態勢確立

- 군수오지마을 방문대화
- 읍면장 1일 1마을 방문대화
- 군·읍면공무원의 마을 담당제 활성화
- 1마을 1실과 자매결연 추진

○ 災難豫防 強化

- 주요시설물 안전 점검 : 자체, 합동점검 (분기 1회이상)
- 취약 시설물 중점관리 : 정기점검, 대주민 안전제도
-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 24시간 상황체제 유지
- 인명 구조 장비 확보 : 유압스프레다의 4종, 53백만원
- 위험 교량 재가설 : 3개소(송정,미날,남안교), 3,010백만원
- 수해 위험 지구 정비 : 기성제 정비 및 제방축조, 198백만원
- 폐석 유실 방지 사업 : 2개소, 131백만원

○ 不實工事 防止 對策

- 주요 공정 현장 확인 : 기초검사(감사+기술), 공사실명제확행
- 예비준공검사제도운영 : 설계에 의한 적정성 확인
- 감시 체계 확립 : 간부공무원 공사감독제 운영,
명예감시관제 운영
- 부실시공자에 대한 제재 : 재시공, 입찰자격 제재등

住民과 함께하는 奉仕行政 具現

1. 信賴·奉仕 公職者像 定立

○ 公職者 自己革新

精 神

⇒ 결과에 책임지는 「주인정신」

姿 勢

⇒ 주민에게 신뢰받는 「참된 봉사」

行 動

⇒ 찾아서 일하는 「공직자상」

○ 公職者 精神教育 內實化

- 의 식 교 육 : 「긍정」「적극」「능동」자세 함양
- 소 양 교 육 : 「자기계발」「지적능력」「업무연찬」

○ 公職紀綱의 刷新

-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 : 무사안일 공직자 추방
- 능력위주의 인사 운용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대
-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 : 해외연수, 효도관광, 동호회활동
- 공 직 비 리 척 결 : 각종 부정비리 원인제거

2. 民願處理 革新

○ 滿足한 民願行政 實踐

- 공간만족 : 불편 없는 민원인 전용 「 공간 」 확보
- 시간만족 : 장시간 대기 하지 않는 「 신속 」 처리
- 정보만족 : 군민의 알 권리와 가부는 「 명확 」 하게
- 자세만족 : 민원인에게는 최대한 「 친절 」 하게

○ 民願行政 特殊施策 推進

- 생활 민원 해소 :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확대,
건축물지번 찾아주기등
- 민원처리절차 개선 : 첨부서류감축, FAX발급민원확대 시행
- 민원인 편의 시책 :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 민원실명제
- 민원 행정 내실화 : 민원모니터제, 효율적인 민원실운영등

종합 민원실 신축

- 위치 : 평창읍 하리 210 - 2 (군청사 부지내)
- 규모 : 1동 312평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 주요시설 : 종합민원창구, 휴게실, 행정정보실,
민원전용 복사기, FAX기, 안내시스템,
상담실, 기관장직소민원실, 군 금고

3. 現場行政 強化

○ 體驗行政 實踐

體驗行政 ⇒ 「 주민삶의 현장 」기관장, 간부 직접체험

民意行政 ⇒ 「 소외, 그늘진곳 중심 」고충, 애로, 숙원해결

豫防行政 ⇒ 「 취약요소중심 」 사건, 사고, 민원예방

責任行政 ⇒ 「 지역민의 파악 」 문제점 시정, 시책반영

- 간부공무원 현장체험활동 : 군민애로사항청취, 일체감조성

○ 郡民과 함께 하는 열린行政 實踐

- 군 정 설 명 회 : 군민의 군정 참여의식 제고

- 군 수 실 개 방 : 지역현안, 민의수렴 해결

- 사업설명회, 주민공청회 : 주민의견 사업반영

○ 移動郡廳 運營

- 시 기 : 매월 1회 (셋째주 수요일)

- 방 법 : 읍면순회

- 내 용 : 각종민원접수처리, 법률상담, 이동의료원

○ 生活法律 無料相談室 運營 : 郡民의 便益保護

4. 健全한 社會秩序 確立

○ 道德性 回復教育 內實化

가	정	: 화 목 한 가 정	⇒	孝
학	교	: 건 전 한 청 소 년	⇒	禮
사	회	: 정 의 로 운 사 회	⇒	義
단	체	: 희생 · 봉사 정신	⇒	情

○ 生活改革 3大實踐課題 推進

기 초 질 서 지 키 기 : 불법주·정차, 교통질서 확립

행 락 지 쓰 래 기 손 수 치 우 기 : 오물투기안하기, 자연훼손안하기
행락질서, 국토대청결

주 민 생 활 불 편 해 소 : 노상적치물, 광고물, 표지판정비

- 민간단체자율선도 :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단체, 노인회등

- 주·정차질서확립 : 교통안전시설확충 758개소, 80백만원

農業의 競爭能力 培養

1. 農業競爭力 強化

○ 專門農業人 育成

- 농어민 후계자육성 : 56명 (345명 → 401명), 1,630백만원
- 전업농 육성 : 15농가(90명 → 105명), 888백만원
- 관광농원 육성 : 2개소(6개소 → 8개소), 400백만원

○ 科學營農 및 技術普及

- 새해영농설계교육 : 작목기술 및 경영능력 함양
- 작목별 시험 재배 확대 : 지역풍토에 맞는 작목개발
- 밭 토양 종합검정전산관리 : 토양 환경개선 보전
- 지역농업 개발 센터 설치 : 30,485㎡, 3031백만원
 - '96 까지 : 부지매입, 부대시설1식, 421백만원
 - '97 계획 : 청사신축, 1,944백만원

○ 農業生産基盤施設 擴充

- 경지정리사업 : 4개지구 (85.35ha), 1,855백만원
- 밭기반 정리사업 : 3개지구 (102.4ha), 5,602백만원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5.9Km, 596백만원
- 생활용수 개발사업 : 2개소, 260백만원
- 수리 시설 개·보수 : 12개소, 710백만원
- 지력 증진 : 객토(2,564ha), 토양개량제(1,733톤)

○ 營農機械化 事業

- 기계화 영농단구성 : 16개단 (196 → 212), 360백만원
- 농기계 공급 : 500대, 500백만원
- 농기계 보관 창고 : 16동(59동 → 75동), 406백만원

2. 農産物 流通加工施設 擴充

○ 農産物産地共販場 設置 ('97 ~ '98)

- 위치 : 용평면 이목정리
- 사업량 : 1개소 (부지 10,000평)
- 사업비 : 5,868백만원 ('97 : 1,383백만원)

○ 特産物 展示 販賣場 設置 ('97 ~ '98)

- 위치 : 도암면 횡계리
- 사업량 : 1개소 (부지 3,000평)
- 사업비 : 2,900백만원 ('97 : 1,000백만원)

○ 農産物 低溫 貯藏庫 設置 : 1개소, 50백만원

○ 藥草加工用冷風乾燥機支援 : 1개소, 85백만원

○ 農産物 規格 出荷 : 464천매, 239백만원

3. 尖端農業施設 擴充

-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 2개소 (대화3리, 백옥포2리) 500백만원
- 비닐 하우스 현대화 사업 : 8읍면(3.2ha), 384백만원
-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 : 1개소(차항리), 2,013백만원
- 고냉지 채소 지하수 개발 사업 : 6개소, 270백만원
- 버섯 재배사 현대화 사업 : 3개소, 60백만원
- 인삼 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 : 1개소(도돈리), 23백만원
- 고냉지 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 4개소, 1,660백만원

4. 地域特化 所得源 開發

- 청정쌀 대단위 시범단지 조성 : 1개소(25ha), 20백만원
- '97지역특산물태양초개발사업 : 4개소(미탄면외3), 400백만원
- 고냉지 여름 양파 재배 사업 : 1개소(진부면), 227백만원
- 특산 단지 조성 사업 : 1개소, 141백만원
- 고급 양채류 생산 단지 조성 : 1ha, 120백만원
- 찰옥수수생산출하시범단지조성 : 2개소(미탄, 방림), 14ha

5. 高所得 作目開發 試驗事業

- 인공 배지 양액 재배 사업 : 1개소, 120백만원
- 냉수 이용 고급 버섯 생산 : 2개소, 34백만원
- 백합 종구 생산 시범 사업 : 1개소, 10백만원
- 버섯균상 자동화생력재배사업 : 1개소, 196백만원
- 폐광활용 관광 버섯농장 설치 : 1개소, 75백만원
- 수출 고추 냉이 시험 재배 : 1개소, 20백만원
- 허브분화재배·가공 상품개발 : 1개소, 33백만원

6. 環境保存形 營農施設

- 무공해 쌀 생산 단지 조성 : 1개소 54.6ha, 57백만원
- 지붕 개 폐 식 발 효 축 사 : 1개소, 15백만원
- 톱밥 시설 이용 우유 생산 : 1개소, 15백만원

7. 畜産經營改善

○ 競爭力 強化事業

-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 104백만원
- 젓소 경쟁력 강화 사업 : 8개소, 375백만원
- 돼지 경쟁력 강화 사업 : 3개소, 272백만원
- 닭 경쟁력 강화 사업 : 2개소, 87백만원
- 기타 가축 육성 사업 : 2개소, 80백만원
- 젓소 능력 배가 마을 육성 : 10호 200두, 15백만원

○ 養豚團地造成事業 : 1개소, 1,092백만원

○ 家畜飼育 基盤擴充

-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 : 1,500기, 138백만원
- 닭리작 사료 작물 재배 사업 : 300ha, 91백만원
- 조사료 생산 기반 : 1,198백만원
- 가축 방역 사업 : 66,880두, 23백만원
- 소수급 전산화 사업 : 5,240두, 47백만원

○ 韓牛 高級肉生産基盤施設

- 청정한우고급육 생산 사료 공급 : 2개소, 50백만원
- 한우고급육방목장 조성 : 3개소, 36백만원

○ 畜産環境改善

- 가축분뇨처리시설 : 13개소, 1,052백만원
- 젓소 톱밥 발효 운동장 : 5개소, 75백만원

○ 平昌江 稚魚放流 : 69,300미 (메기, 뱀장어) 27백만원

8. 農村住居 環境改善 事業

○ 住 宅 改 良 : 8읍면, 3,867백만원

- 주택신축 210동, 주택개량(부엌·목욕탕, 화장실) 317동 -

○ 聚落 構造 改善 事業 : 1개소, 200백만원

○ 民 泊 改 良 : 8읍면, 13동, 247백만원

○ 農業人健康管理室設置 : 1개소, 50백만원

9. 山林資源保護育成

○ 山林資源造成

- 조 립 사 업 :	1,490ha,	4,068백만원
- 풀 베 기 사 업 :	3,556ha,	1,181백만원
- 덩굴 제거 사 업 :	597ha,	126백만원
- 어린 나무 가꾸기 :	390ha,	343백만원
- 천 연 립 보 육 :	200ha,	180백만원
- 보 조 간 벌 :	266ha,	197백만원

○ 山林保護 育成

- 솔잎혹파리방제사업

· 옆 면 시 비 :	2,000ha,	58백만원
· 수 간 주 사 :	3,500ha,	1,816백만원
· 피 해 목 벌 채 :	1,850ha,	926백만원
· 지 면 약 제 살 포 :	20ha,	7백만원
- 산 불 방 지 사 업 :	120,621ha,	134백만원

○ 山林所得經營事業

- 균 직 영 피 해 목 벌 채 :	10ha,	30백만원
- 양 묘 사 업 :	0.3ha,	11백만원

맑고 깨끗한 淸淨 環境保存

1. 맑은 물 供給

○ 上水道施設 擴充

- 珍富 上水道施設 : 2,000T/D ⇒ 9,500T/D, 7,230백만원
 - '96 까 지 : 취정수시설, 송배수시설1식, 4,000백만원
 - '97 계 획 : 정수시설 1식, 500백만원
- 蓬坪 上水道施設 : 600T/D ⇒ 8,700T/D, 7,600백만원
 - '96 까 지 : 정수시설1식, 송수시설1식, 3,150백만원
 - '97 계 획 : 여과시설1식, 송수시설1식, 1,250백만원
- 道岩 上水道施設 : 1,000T/D → 4,000T/D, 7,000백만원
 - '97 계 획 : 실시설계, 취정수시설1식, 1,789백만원
- 老 朽 管 交 替 : 1,500m (용평면), 90백만원
- 簡易上水道 新設 및 補修 : 7개소 (도둔리외), 675백만원

2. 清潔한 生活環境 改善

○ 산 좋고 물 맑은 江原지킴이運動 活性化

- 추진주관 : 행정 + 민간단체

- 추진내용

- 환경보전 범군민 실천운동전개 : 기념행사, 유선방송, 반상회
- 산간, 하천 휴식년제 실시 : 4개소 (1 ~ 2년차등)
- 민간 단체 책임 정화구역 지정 : 단속, 계도활동
- 신고 보상 제도 운영 : 고발정신함양

○ 民間團體 參與 活性化 誘導

- 자연환경 명예 지도관 위촉 : 88명

- 민간단체 사업 활동비 지원 : 5백만원

○ 汚染行爲指導 團束強化

- 하절기 특별 단속 실시 : 행정·민간단체 합동 (6 ~ 8월)

- 배출 시설 지도 단속 : 385개소, 년6회

○ 河川水系の 體系的 管理

- 하천 수질 검사 실시 : 년4회 (17개하천, 16개지점)

- 하천 담당 책임제 운영 : 17개 실과소

- 하천오염행위예방홍보물설치 : 8개소

3. 쓰레기 處理場 및 裝備補強

○ 衛生埋立場 補強

- 진부쓰레기매립장 조성 ('97~'98) : 10,000m², 2,740백만원
('97 : 605백만원)
- 방림쓰레기매립장 조성 ('97~'98) : 19,623m², 1,320백만원
('97 : 234백만원)
- 대화쓰레기매립장 조성 ('93~'97)
 - '96까지 : 부지매입 32,244m², 소각시설1식, 477백만원
 - '97계획 : 위생매립장 조성 16,900m², 2,250백만원
- 봉평 쓰레기 매립장 조성 ('97) : 16,000m², 2,319백만원

- 清掃 裝備 補強 : 2종, 15백만원
- 롤 은 박 스 : 4대, 10백만원
- 자동 상차 용기 : 10개, 5백만원

따뜻한 保健福祉 向上

1. 低所得層 生活安定支援

○ 低所得層 生計保護

- 거택보호 : 718세대 (1,205명), 1,520백만원
- 자활보호 : 315세대 (820명)
- 비보호 저소득층 : 20명, 9백만원
- 자녀학비·장학금 지원 : 194명, 90백만원
- 의료보호사업 : 1,169세대(2,268명), 644백만원

○ 自立自活基盤支援

- 생활안정기금용자 : 23가구, 154백만원
- 노임취로사업 : 8읍면, 70백만원

○ 疎外階層 特別 保護

- 장애인 지원사업 : 74명, 28백만원
-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 65세대, 32백만원
- 모자가정 지원 : 34세대, 7백만원

2. 生活福祉시혜 擴大

○ 老人福祉 向上

- 노인활동비지원 : 6,055명, 676백만원
 - 노령수당, 건강진단, 교통수당, 일거리제공등
- 노인복지시설 확충
 - 장평노인복지회관건립마무리 : 1동, 634m², 566백만원
 - 마을경노당건립 : 2동, 100백만원
 - 마을회관보수경노당확충 : 15동(28동→43동), 128백만원
- 불우노인위로 : 2개사업, 25백만원(노인장수식당, 회갑잔치)

○ 女性地位向上과 社會參與

- 교 양 교 육 : 취미교실, 직업훈련
- 상 담 실 운 영 : 여성의전화, 가정방문 상담
- 여성 단체 협의회 지도 : 월례회, 불우이웃 위문등

○ 健全兒童, 靑少年 保護育成

-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지원 : 10개소, 685백만원
- 보 육 시 설 확 충 : 2개소, 372백만원
- 소년소녀가장캠프 : 2회, 35세대, 51명
- 청소년공부방 운영 : 1개소, 15백만원
-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 : 12회 (월1회), 18백만원
- 건전 청소년 육성 : 청소년선도, 위해환경업소단속

3. 保健醫療시혜 向上

○ 醫療施惠 擴大

- 의료 서비스 개선 : 의료시설신·개축, 장비구입, 627백만원
- 이동보건의료원운영 : 12회 (주간10, 야간2)
- 가정방문 건강상담 : 전주민 의료시혜 확대
- 급성 전염병 관리 : 일본뇌염외 3종, 9,080명
- 예방접종 : B형 간염외 5종, 6,314명
- 모자보건사업 : 영유아, 산전·산후 임산부 관리
- 만성병관리 : 성병(1,800명), 결핵(2,672명)
- 아동건강증진 : 소아 당뇨 및 콜레스테롤검사, 치아홈메우기 등

○ 靈安室 新築

- 위치 : 평창읍 중부리 504
- 규모 : 1동, 78평 (지하1, 지상1)
- 사업비 : 321백만원

○ 清潔한 衛生 管理

- 위생업소지도 관리 : 1,353개소 (업주위생교육, 자율지도)
- 건강위해식품 단속 : 년중 (유통기한, 보관상태)
- 심야퇴폐업소 단속 : 법질서 확립, 건전음식문화조성

均衡的 地域開發 促進

1. 道路網 擴充

[총 114개노선 939.27km, '96까지 포장율 44.1%]

- 고속 도로 : 1개노선 51.30km (포장율 100%)
- 국 도 : 3개노선 150.27km (포장율 100%)
- 지 방 도 : 8개노선 144.80km (포장율 51%)
- 군 도 : 15개노선 190.50km (포장율 33%)
- 농어촌도로 : 87개노선 402.40km (포장율 19%)

○ 郡道 擴·鋪裝 ————— 4.9Km, 2,578백만원

- 운 교 ~ 방 립 : 1Km, 526백만원
- 신 리 ~ 마 평 : 2.3Km, 1,212백만원
- 거 문 ~ 하진부 : 1.6Km, 840백만원

○ 農漁村 道路 擴·鋪裝 ————— 8.8Km, 2,630백만원

- 후 평 ~ 원 당 : 2.3Km, 700백만원
- 송 정 ~ 신 기 : 2.3Km, 792백만원
- 상월오개 ~ 거 문 : 2.1Km, 534백만원
- 차 향 리 : 2.1Km, 604백만원

※ 포장율 : 군도 33% ⇒ 36%, 농어촌도로 19% ⇒ 22%

2. 農村 基盤 施設 擴充

-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 : 10.3Km, 1,030백만원
- 정 주 권 개 발 사 업 : 도암면 일원, 672백만원
- 도암문화마을조성사업 : 도암면 횡계5리, 897백만원
- 오 지 개 발 사 업 : 봉평, 용평, 1,362백만원
- 소 교 량 가 설 : 12개소, 555백만원

3. 都市 基盤施設 擴充

- 도시 계획 재 정 비 : 2개소(횡계, 진부), 371백만원
- 시가지 진입로 정비 : 1km (진부) 900백만원 ('97 : 400)
- 하 수 도 정 비 : 3개소(평창, 대화, 진부)
1,120m, 470백만원

4. 住民 宿願 事業 推進

-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 간이상수도 1식, 30백만원
- 중리 지구 내수 침수 해소 : 배수로 38m, 45백만원
- 소규모 주민 편의 사업 : 200백만원

觀光產業育成과 文化體育振興

- 天惠의 自然資源을 觀光資源化 : 開發과 保存 並行
- 郷土文化의 發掘育成과 郡民體位 向上

1. 觀光受容態勢 確立

○ 觀光客 親切맞이 運動展開

- 친절, 청결, 봉사로 관광군 이미지 부각
- 전 군민의 관광안내 요원화

○ 觀光案内施設의 整備 擴充 ————— 66백만원

- 관광지 안내 표지판 : 13개소
- 관광 홍보물 제작 : 1종 25천부
- 관광 안내서 비치대 정비 : 15개소

○ 郡界整備事業推進 — 6개소 60백만원(안내, 편의시설)

○ 觀光客便宜施設 整備

- 다중 이용 시설 국제화 : 터미널, 공중화장실
- 接客업소 봉사 교육 : 관광업소, 음식점, 택시등

2. 地域特性을 살린 觀光開發

○ 觀光이벤트 事業의 活性化 : 103백만원 투자

- 대관령눈꽃축제 : 행사규모 확대, 관광자원화
- 효석백일장 : 메밀꽃축제화
- 노성제 : 전통문화행사로 계승발전
- 감자축제 : 먹거리 개발, 판촉홍보

○ 非指定 觀光地 運營 內實化 : 시설물정비, 운영기간연장

—— 19백만원

[종합캠프장 조성]

- 위치 : 평창읍 노람뜰, 진부면 수향계곡
- 규모 : 60,000m²
- 사업비 : 350백만원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주민소득시설, 체육시설등

3. 民間資本投資 觀光開發

○ 용평리조트(발왕산개발) : 슬로프3면, 리프트3기 789억원

○ 휘닉스 파크 리조트 : 스키장,골프장,숙박시설 3,843억원

○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유치

- 호 텔 — 2개소 406실 — 359억원

· 호텔 김스클럽 — 306실 — 300억원

· 오대산가족호텔 — 100실 — 59억원

- 휴양 콘도 미니엄 — 5개소 1,383실 — 2,630억원

· 한국 콘도 — 198실 — 385억원

· 풍림 후랜드리 — 297실 — 846억원

· 동부 오대산 — 369실 — 546억원

· 용산 리조텔 — 299실 — 576억원

· 금 당 — 220실 — 277억원

4. 體育과 傳統文化繼承

○ 體育敎室 運營

- 생활 체육 교실 : 체육동호인육성, 심신단련, 건전여가생활
- 어린이체능교실 : 체력발달, 정신, 신체적 균형성장
- 장수 체육 대학 : 노인여가선용, 건강증진
- 청소년체련교실 : 체력향상, 건전청소년 육성
- 여성 생활 체육 : 여성심신단련, 건강한 가정육성
- 가족 생활 캠프 : 체력증진, 화목한 가정분위기 조성

○ 生活體育 活性化

- 종목별 단체 조직 육성 : 축구의 3종목
- 생활 체육 대회 개최 : 생활체육저변확대(분산개최)
- 생활체육인 동호인 조직확대 : 1인 1종목 참여 유도

○ 生活體育 空間 擴充

- 체육공원 활용 극대화 : 주민자율관리, 이용율제고
- 생활체육시설 보강
 - 대관정궁도장건립마무리 : 13,799㎡, 500백만원
 - 노성정 시설 보완 : 전기, 상수도시설, 27백만원

○ 大和文化體育館建立 마무리 ('95 ~ '97)

- 규 모 : 5,009m², 연건평 2,737m²
- 사 업 비 : 2,400백만원
- 추 진 실 적 : 1층골조완료, 2층시공중
- '97 투 자 : 552백만원

○ 專門體育人育成

- 군·읍면 체육회 운영내실화 : 사무국 보강
- 군 실 업 팀 육 성 : 7명, 131백만원
- 학 교 체 육 육 성 : 1학교 1종목 육성지도
- 유 망 선 수 지 원 : 장학금지원 사기양양

5. 傳統文化繼承發展

○ 文化財保存管理

- 매 장 문 화 재 자 료 조 사 : 군내일원, 20백만원
- 지방문화재 보수
 - 아 양 정 : 1동, 21m², 64백만원
 - 월 정 사 유 물 전 시 관 : 1동, 684m², 1,500백만원

○ 「 第 20 回 魯城祭 」 郡民 祝祭化

- 행 사 주 관 : 평창군 노성제 위원회

- 민속·문화행사 : 중의제, 민속경연, 노래자랑, 문예행사등

- 체 육 행 사 : 육상,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피구등

○ 傳統民俗놀이 育成 : 평창아리랑, 농사놀이

○ 可山文化마을 整備 : 생가,가산공원,안내판등 250백만원

○ 綜合文化藝術 會館 建立 ('94 ~ '98)

- 위 치 : 평창읍 중부리 산 66 - 6

- 규 모 : 연건평 1,208평 (지하1, 지상2)

- 추 진 실 적 : 2층 골조공사 완료

- '97 투 자 : 600백만원

冬季國際大會對備完璧한準備

- | | | |
|--------------|-------|------------|
| ○ 冬季아시아 競技大會 | ————— | '99. 1 ~ 2 |
| ○ 월 드 컵 스키大會 | ————— | '98. 2 |

1. 競技場 施設 擴充 — 2개사업, 115,056백만원

- 스키장 — 발왕산개발, 스키장 3면, 리프트 2기
- 빙상장 — 실내 및 실외 2개소

2. 開催地周邊整備事業

- 계획 : 총 8개사업, 88,578백만원
- '97 추진 : 4개사업, 8,578백만원
 - 황계 시가지 상세 계획 수립 : 500백만원
 - 경기장 진입로 (황계교~송천교) : 0.6km, 5,100백만원
 - 도암 상수도 확장 : 1,978백만원
 -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 : 1개소, 1,000백만원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119
----------	-----

제 출 자 평창군수
제출년월일 '96. 12 . .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조)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서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나. 과태료부과 처분 횟수 및 양도·상속시 처분방법(안 제3조)

- 2개이상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각각에 부과함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함
- 영업권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도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 효과는 승계함

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하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안 제4조)

라.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및 기타필요한 사항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한다(안 제5조)

마.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고 이의제기 즉시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6조)

바. 독촉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징수하여 군수입으로 하고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를 처분한 때에는 국고로 귀속한다 (안 제7조, 제8조)

3. 관련법령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1995. 5. 1. 제정)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그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과태료처분 횟수 및 행정처분 적용방법) 과태료부과 처분횟수 및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적용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위반행위가 2개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권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청문) ①법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처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2회이상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어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피처분자에게 청문사유, 일시 및 장소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③피처분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태료 처분통지서(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처분의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과태료납부통지서(별지제4호서식)를 피처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며, 동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피처분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이의제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1.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제9조제2항)	100	300	500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4항)	100	300	50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서 그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제2항)	100	300	500
4.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9조제3항)	100	200	300

[별지 제1호서식]

법규위반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수 신 :
 제 목 :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귀하께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 항 호를 위반하였기에
 아래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제 호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반장소 또 는 영 업 소	성 명		업 종	
	소재지	(전화)		
위반사항	근거			
	내용			
과 태 료	금액			
	산출근거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 결정 통지
 귀하께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 항 규정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군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처분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 반 장 소				
위 반 사 항	위 반 법조항		위반 내용	
	산출근거			
과태료금액				

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개인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 제 항									
성명		주소		관		임시적 세외 수입		과 태 료	
남 부 의 무 자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군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평창군수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과태료납부서									
위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 제 항									
성명		주소		관		임시적 세외 수입		과 태 료	
남 부 의 무 자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군 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서									
위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 제 항									
성명		주소		관		임시적 세외 수입		과 태 료	
남 부 의 무 자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귀하

(영수필)

제 호 과태료납부영수서									
위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 제 항									
성명		주소		관		임시적 세외 수입		과 태 료	
남 부 의 무 자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h2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납부독촉장</h2>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일자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군농협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h1>평 창 군 수</h1>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소 :

성명 :

귀하

①고지금액	②취소(변경)액	③차액	비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처분 및 불복내역	과태료납부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관청		이의제기일자	
	과태료처분 사유			
	과태료처분 불복사유			

첨부 1. 위반사례적발보고서 1부.

2. 담당공무원의견서 1부.

평 창 군 수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②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그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①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5조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